

등록번호	가정복지과-20349
등록일자	2009.08.19.
결재일자	2009.08.21.
공개구분	비공개(5)

담당자	★◎보육행정 담당주사	가정복지과장	주민생활지원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조영아	이현근	김문환	심성구	이해돈	08/21 현동훈
협 조	총무과장 이범주 복지노무담당주사 최경구				

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개원현황 및 임시 운영계획



가정복지과

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개원현황 및 임시 운영계획

우리구 직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문제 해결 및 직원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「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」 개원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직원자녀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함은 물론 합리적인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 하고자 함.

I. 관련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14조(직장보육시설의 설치)
-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2항(보육의 우선 제공 : 직원자녀 1/3 이상)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(사업주의 비용보조 : 필요비용 50%이상)
-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보육사업안내
- 2009년 직방보육시설 운영 및 자녀보육료 지급계획 (총무과-12422, 2009.10.1)
- 2009년 직원 자녀보육료 지급계획(총무과-387, 2009.1.8)

II.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

- 직장어린이집 설치 개요
 - 위치 : 서대문구 연희로 191 (연희동 143-1. 제3별관)
 - 시설규모 : 지상 1·2층 356.24m² (3·4층 자원봉사센타)
 - 보육정원 : 49명 (시설규모 및 보육의 연속성 반영)

구 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
연령 별 정원	3	5	7	15	20	20
직장어린이집 정원	2	2	7	10	14	14

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추진현황

- 2008. 10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총무과
- 2008. 11 2009년도 직장어린이집운영 예산편성 총무과
- 2009. 05~07 직장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공사 총무과
- 2009. 05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가정복지과
- 2009. 06~07 직장어린이집 원아모집 가정복지과
- 2009. 07 직장어린이집 개원 준비 기자재구입비 및 인테리어공사비 등 지원 가정복지과
- 2009. 08 직장어린이집 개원 운영 가정복지과

III. 직장어린이집 개원 현황

- 개원일 : 2009. 8. 3(월)
- 보육대상 : 서대문구 직원 자녀
- 보육정(현)원 : 49명(8명)

2009. 8. 14 현재

구 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
연령별 반편성 정원	3	5	7	15	20	20
인건비지원 최소인원 (보육사업안내)	2	3	4	8	11	11
직장어린이집 정원	2	2	7	10	14	14
직장어린이집 현원	2	5	0	1	0	0

종사자 임면현황 : 6명

시설장	비담임	보육교사	취사부
1 명	1 명	3 명	1 명

IV. 직장어린이집 운영 문제점

1

직장어린이집 보육정원 미달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

- 2·3·4·5세반 정원 45명 중 현원 1명으로 월 보육료세입 8,481,000원 감소
 - 2세 278,000원 × 7명 = 1,946,000원
 - 3세 191,000원 × 9명 = 1,719,000원
 - 4·5세 172,000원 × 28명 = 4,816,000원
- 구립보육시설 기준 종사자 인건비 지원계획(구청장 방침)에 의거 현재 보육 현원 8명으로 시설장 및 취사부, 일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여 직장어린이집 보조금 세입 3,303,950원 감소
 - 시설장 인건비 지원 기준 : 보육현원 21명 이상 인건비 100% 지원
 - 취사부 인건비 지원 기준 : 보육현원 40명 이상 인건비 100% 지원
 - 3세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: 보육현원 8명 이상 인건비 30% 지원
-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조금수입 부족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도 못하는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며, 현재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(구립보육 시설 지원기준)에 의하면 추가 지원 불가함.

2

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 지역주민에 공개 요구

- 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공개 요구 민원 발생
 - 2009. 8.5 『구청장에 바란다』 민원 접수
 - 2009. 8.5 현재 직장어린이집 보육현원은 7명으로 지역주민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요구
-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시설규모 및 직원의 직장보육시설 이용희망 수요를 반영 책정된 것으로 보육대상을 주민자녀로 까지 확대할 경우

직원 자녀의 보육기회 축소 예상.

-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을 지역주민에 까지 확대할 경우 민간·가정 보육시설의 집단민원 발생 우려.

IV.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

제1안

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 직원자녀로 제한 운영

-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 - 현행 총무과 직장어린이집운영 방침과 동일
 - 보육대상 : 서대문구 직원 및 도시관리공단 직원 자녀
 - 보육정원 : 49명
 - 반 운영 : 연령별 반정원 범위내 보육희망 수요에 의거 반평성
(현재 3세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이 8명이나, 보육을 희망하는 유아 1명으로 반편성 운영 중)
 - 지원기준 : 구립어린이집 수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■ 장점

- 직장보육시설 설치 목적 및 당초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용 희망 수요에 적합.
 - 직원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 확보를 통한 직원 자녀 양육 지원 환경 조성.

■ 단점

-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조금수입 부족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도 못하는 정상 운영 불가 상태 도래
 - 직장보육시설 정원 미달 상태가 장기화 할 경우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타 자치구의 직장보육시설 운영 사례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직장보육

시설 이용 요구 민원 발생 및 직장어린이집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주민 비난 우려

- 직장보육시설은 직원자녀의 보육 비율을 1/3 이상으로 규정(보건복지 기족부, 보육사업안내)하고 있고,
- 타 자치구의 직장어린이집은 일부 보육정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사례 비교

제2안

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 지역주민 자녀까지 확대



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

- 보육대상 : 서대문구 직원 및 도시관리공단 직원 자녀, 지역주민 자녀
- 보육정원 : 49명(직원자녀 25, 지역주민 자녀 24)
- 반 운영 : 각 연령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수에 의거 반편성
- 지원기준 : 구립어린이집 수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

장점

-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감소
- 직장어린이집 이용희망 주민 민원 해소



단점

-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목적인 직원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이용 기회 축소
-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민간인의 자본으로 시설 설치후 운영비는 국·시·구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보육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구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경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집단 민원 우려.

제3안

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 지원자녀로 한시적 제한 운영

■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

- 보육대상 : 서대문구 직원 및 도시관리공단 직원 자녀
- 보육정원 : 49명
- 반 운영 : 연령별 반정원 범위내 보육희망 수요에 의거 반평성
- 지원기준 : 구립어린이집 수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※ 단, 정원 90% 이상 도달시까지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
- 운영기간 : 2010년 2월까지 상기 기준에 의거 한시적 운영
- 추후 운영계획 : 직장어린이집 이용 희망 추가 설문조사결과 및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육대상 민간에 개방 여부 및 비율 확정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결정.

■ 장점

-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인 지원자녀 양육 지원환경 조성 및 지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 확보
-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나,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.
- 지역주민 및 민간·가정보육시설의 상반된 이해관계 해소

■ 단점

- 정원기준 현원이 현격히 부족한 상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 함에도 민간에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, 이에 따른 부족예산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

V.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에 대한 검토의견

- 직원자녀 우선 보육 및 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을 위한 제3안 시행
 -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용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직원자녀 양육지원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로 한시적으로 보육현원 대비 운영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단점이 있으나,
 - 직장보육시설 인근 구립어린이집에 직원자녀가 20여명 재원중이고 학기중 직장어린이집이 개원되어 영유아의 보육시설 적응기간 및 겸종되지 않은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불안 또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비선호, 직장어린이집의 청사외부 설치 등 직장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볼때,
 - 2010년 2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 직원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보육권을 유지하고,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을 추가 보전하여 정상운영 할 경우 보육 현원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나,
 - 2010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역주민 자녀에게 보육정원의 일부를 공개할 경우도 직장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직원 및 공무원노조의 이해 및 합의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.

VI. 행정사항

- 직장어린이집 이용 희망 직원설문조사 및 서대문구 공무원 노조와 직장어린이집 정원 및 예산지원 기준에 관한 협의 : 총무과
- 상기 결과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운영 : 가정복지과